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교5차

-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**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**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*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 - * 천톤이상&CMR(~'21년), 100~천톤(~'24년), 10~100톤(~'27년), 1~10톤(~'30년)
- 2024년은 3단계 등록유예기간의 첫해로써 협의체에 가입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셔야 원활한 등록이행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-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"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"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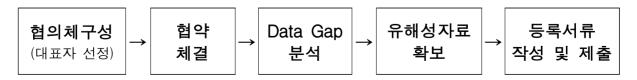
□ 지원대상

- O (지원대상)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고 조기등록 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
 - '27~'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(연간 제조·수입량 1톤 이상~100톤 미만)
 -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(Active)이 중소·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,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
 - 협의체 구성,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

□ 지원내용

-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
 - 협의체 구성(대표자 선정)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

< 공동등록 이행 절차 >



○ 세부 지원내용

① 등록 컨설팅

- 협의체 구성·운영,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, 시험자료 확보 방안, 용도조사, CSR자료 작성, 등록서류 작성 등
 - ※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

②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

- 국내 GLP 시험기관으로부터 생산한 시험자료 비용 일부 지원
-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~95%, 일반시험은 60~70% 지원 ※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미지원
- ③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

□ 운영절차

- (담당기관)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
- 운영절차

모집공고 ('24.3.18.~)	신청·접수 ('24.5.2.~5.31.)	지원대상 선정 ('24.6.)	3자 협약체결	등록완료 (2년 이내)
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	신청·접수	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	선정물질 3자 협약체결	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
협회	협의체 대표자	협회	협회, 협의체 대표자, 컨설팅기관	협의체 대표자

유의사항

- ① 전과정 지원시업에 참여의시가 있는 물질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② 대표자 등록통지서는 2년 이내('26.6.30.)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, 지원금은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됨. 일정은 등록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나,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엄수하여야 함 (※ 지원 조건 및 제출기한 미충족 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)
- ③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은 별도의 공지내용에 따름
- ④ 지원대상 협의체는 시험자료 항목별 확보방법(구매·생산 등) 및 생산·행정비용 등 공동등록 전과정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상세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
- ⑤ 지원대상 협의체는 유해성 정보 DB구축 자료,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(K-Chesar),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(ESD&T) 등 정부지원 자료를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
- ⑥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결과는 "노출시나리오 작성 예시집"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신업계에 배포 예정임(단 시업장 정보 및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 제외)
- ⑦ 협의체 대표자와 컨설팅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시업 참여가 제한됨

□ 신청 및 대상선정

- (신청기간) '24. 5. 2.(목) ~ '24. 5. 31.(금) 14:00
- (신청대상) 협의체 대표자
- (신청방법)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(sbm.kcma.or.kr)을 통해 신청

○ 신청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지원신청서(신청시스템 내 작성)	붙임 1
2	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(신청시스템 내 작성)	붙임 2
3	협의체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	정부기관 발급본
4	컨설팅 계약서(협의체-컨설팅기관)	-
5	그 밖에 관련 증빙자료	필요시 요청

- (선정방법)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
 - 지원조건, 지원예산 규모,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
 - ※ (평가기준) 중소기업 비율, 중소기업 수, 최대톤수 비율, 제조업체 비율 등
- (선정결과) 6월 중 홈페이지* 게시
 - *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<u>www.kcma.or.kr</u>), 산업계 도움센터(<u>www.chemnavi.or.kr</u>),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(sbm.kcma.or.kr)

□ 확인사항

- O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
- O 본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

- O 전과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물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
-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지원사업 선정 물질임을 반드시 공지하고 아래 사항을 협의체 협약서에 반영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함 ※ 협약서에 협약당사자의 등록톤수 기재 必

협약서 반영사항

- ① 이 물질은 환경부가 발주하고 협회가 수행하는 「등록 전과정 지원사업」의 지원을 받는 물질에 해당함
- ②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·중견기업에게 공동등록을 위한 컨설팅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
- ③ 적극적 구성원 중 중소·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위해성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용도개수와 무관하게 위해성자료 작성비용을 청구하지 않음(공동 작성한 위해성자료를 재생산하여 제출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)
- ④ 등록 컨설팅비용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은 협의체 구성원의 비용분담금 에서 제외함
- ⑤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비용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은 협의체 구성원의 비용분담금 및 참조권 등 판매 시 제외함
- ⑥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등록 서류로 사용하여야 함
- ①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금을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하며,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
-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 및 컨설팅기관은 담당기관 요청 (추진현황 조사 등)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O '2024년 지원사업 참여 가능 컨설팅기관 목록' 내 컨설팅기관*과 계약된 경우에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
 - *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내 컨설팅기관등록-컨설팅기관 목록에서 확인가능
- O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
- 협의체 대표자가 협의체의 등록최대톤수 구성원이 아니거나 CSR 작성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, 해당 구성원 등록통지서 등을 사업기간 ('26.6.30.) 내 제출하여야 함 ※ 미제출 시 해당 지원금 차액 환수

□ 문의처

담당기관	연락처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등록지원팀)	02-3019-6760, 6723, 6780

※ 붙임 : 1. 지원신청서 1부.

2.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1부.

붙임1

지원신청서(신청시스템 내 작성)

등록 전과정 지원 신청서								
신청인	상호명		사업자등록번호					
	담당자/전화번호		e-mail					
	주소							
협의체 대표자	상호명		사업자등록번호					
	소재지(주소)							
	대표자(성명)		기업규모	대/중견/중/소				
	담당자명		담당자연락처 (e-mail)					
	담당자연락처 (회사전화번호)		담당자연락처 (H.P.)					
물질정보	고유번호		CAS No.					
	화학물질명		협의체 내 등록최대톤수					
컨설팅 기관정보	컨설팅기관 계약여부	□예 □아니오	컨설팅기관명					

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]

ㅇ 수집 및 이용목적 :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

o 수집항목 : 성명, 전화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회사명, 주소, e-mail 등

ㅇ 보유 및 이용기간 : 5년

- o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권리행사 시 신청 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o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000물질(고유번호; , CAS번호;) 협의체 대표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행하는 「등록 전과정 지원사업」에 참여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: (인)
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귀하

붙임2

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(신청시스템 내 작성)

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

	상호명	사업자등록번호	
신청인	담당자/전화번호	e-mail	
	주소		

연번	상호명	사업자번호	대표자 (성명)	담당 자명	담당자 연락처	등록 톤수	선임 여부	동의 여부	기업규모 (대/중견/	중소.중견 기업확인서
			(00)			_ '	(O/X)	(O/X)	중/소)	유효기간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4										
5										
6										
7										
8										
9										
10										
11										
12										
13										
14										
15										

위와 같이 000물질(.	고유번호;	, CAS남	 번호;	협의체의	적극적	구성원은	<u> </u>
「등록 전과정 지원사업	법」신청에 과턴	반수 이상	동의하였음을	음 증명합니	다.		
				년	<u>.</u>	월 열	일
				신청인		(인	<u>l</u>)